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7도18591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제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산경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노206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2년 12월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8회에 걸쳐 공소외 재단법인(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과 차주 사이의 대출 거래(대출금액 합계 1,182억원)를 중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6. 순번 4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억 2,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연혁, 대부중개업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대부업자와 사금융이용자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이어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대부업법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구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발간 표

준국어대사전) 등을 고려하면,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따라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사실 기재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 피고인들이 대부 거래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 및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의 의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1의 배임증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대부업법위반 부분은 위 5.가.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법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법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약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4839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라.마.바.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근수, 배종혁(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규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고단1803, 2016고단3682(병합), 2016고단4825(병합) 판결
환	송	전	당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노206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1,782,575,783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새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 1,782,575,783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



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와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부중개'의 의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먼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부분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또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무죄 부분은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음으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위와 같이 상고심에서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이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에 위 각 이심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환송 전 당심판결문 각 해당 부분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즉 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고, ②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법리오해

L재단의 금전대여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중개하여도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위한 컨설팅을 한 것이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1,782,575,783원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L재단이 2012. 9.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 서비스 사업(여신금융, 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들의 각 PF대출 관련 행위는 그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내부적·일방적 정관 변경만으로 곧바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배제됨과 아울러 L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도 대부(여신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설령 L재단이 위 각 대출을 영위하는 것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의 성격이 여전히 금전을 '대부'하는 것, 즉 이자부 소비대차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중개하는 것은 '대부중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L재단의 대부업 등록 여부 또는 그 기금 대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PF대출에 있어 당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증 등의 금융자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대부를 할 L재단을 물색·추천하고 그 대출조건의 절충 등 대출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직접 관



여하는 등 대부 '중개'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고려하면,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



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따라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2. 11.경 피고인 B 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투자제안'의 방식으로 L



재단에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L재단의 대출조건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L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들과 접촉하여 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어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위 수수료를 대략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723 내지 3725, 6368 내지 6370면).

②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X, (주)AA을 통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 회사들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위 수수료는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었고(증거기록 3714, 3715면), 실제로도 L재단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면 차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569 내지 3612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문계약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 회사들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대출기관 물색을 통한 대출계약 체결'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용역은 차주와 대주 사이에서 대출을 주선하는 전형적인 업무로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B과 당초 약속한 바에 따라 대출기관인 L재단을 상대로 실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L재단의 대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설득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B이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상당액을 분배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사들이 대



출기관인 L재단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업무인 '대부중개'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

 판사 김수철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8

판사 배종빈 _____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111 가. 배임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다. 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483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8

대법관 오석준 _____